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72
----------	-------

발의연월일 : 2025. 9. 8.

발 의 자 : 서삼석 · 박용갑 · 이성운
이병진 · 김원이 · 신정훈
맹성규 · 박수현 · 조인철
이개호 · 정을호 · 문금주
문대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에 대한 현황 및 특성과 해양보호생물 및 해양생물의 서식현황 등 해양생태계에 관한 기본조사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그런데 해양 해류와 연안류에 의해 운반된 해변의 모래가 해안선을 따라 평행하게 쌓인 해안사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해양수산부는 해안사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관련 보존 및 연구 수행에도 한계가 있음.

또한 해안사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안 및 해양생태계를 개발·관리함에 따라 일부 사구는 사라짐.

해안사구는 국토의 해안선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자연 유산임.

이에 해양수산부가 매년 수행하는 해양생태계 조사 내용에 해안사

구를 추가해 실시함으로써 훼손된 사구를 복원하여, 국토의 유지를 비롯한 천연 해양자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내용 및”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조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의 현황 및 특성
2. 해양보호생물, 우리나라 고유 해양생물 및 외래 해양생물의 서식 현황
3. 해양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
4.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등의 현황
5. 연안습지 및 해안사구의 생태계 현황, 오염 현황 및 사회적·경제적 현황
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u>내용</u>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내용</u>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조사----- -----.
<신 설>	1. <u>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의 현황 및 특성</u>
<신 설>	2. <u>해양보호생물, 우리나라 고유 해양생물 및 외래 해양생물의 서식 현황</u>
<신 설>	3. <u>해양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u>
<신 설>	4. <u>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등의 현황</u>
<신 설>	5. <u>연안습지 및 해안사구의 생태계 현황, 오염 현황 및 사회적·경제적 현황</u>
<신 설>	6. <u>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u>

④ (생 략)	<u>시하는 사항</u> ④ (현행과 같음)
---------	-----------------------------